

◆ 政府 施策 ◆

外資企業 자본재도입 規制완화 – 고도기술수반사업 關稅減免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투자시 자본재를 도입할 때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공급 가능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입이 허용된다.

또 외국투자가가 고도기술기반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본재에 대한 도입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의 검토 및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사업의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공급 가능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입이 허용되고 생산공정에 소요되지 않는 경우라도 수출입공고상 수입자동승인 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도입이 가능해져 자본재 도입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중고품수입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 신품의 수입과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중고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신품과 똑같이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공급 가능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입이 허용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정밀기계·신공정분야, 재료·소재분야, 신물질·생물질산업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항공·수송분야, 환경·에너지·건설분야 등 7개 분야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당해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한해서만 관세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실질

적으로 관세감면 수혜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통신부는 또 지금까지 통신부에서 담당하던 중고자본재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외국환은행에 위임, 조세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제외한 모든 자본재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내에 투자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공고의 적용배제와 함께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도 이번에 시행된 고시의 허용기준에 합당하면 수출입공고에 의한 해당기관의 추천 도는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 기존절차와 새로운 절차 비교

확인대상	기 존 절 차	새로운 절차
1. 조세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통상산업부 - 조세감면사업에 직접사용되는 경우 도입허용(관세감면) - 직접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도입허용(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좌동 - 조세감면사업의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경우 도입허용(관세감면) - 동 조세감면사업으로 일괄신청된 자본재중 동 사업의 생산공정에는 소요되지 않으나 이미 신고수리 또는 인가받은 다른 사업의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경우에도 도입허용(관세)
2. 일반 투자자사업에서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자본재(중고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 - 수출입공고(수입선다변화 공고 적용제외)에 따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좌동 - 신고수리 또는 인가받은 사업의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경우에는 도입허용
3. 중고품인 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통상산업부 - 국산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도입허용 - 국산공급이 가능하더라도 동 자본재가 제품 생산라인 또는 생산라인의 일부 품목이면 도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 - 신고수리 또는 인가받은 사업의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경우에는 도입허용

확인대상	기존 절차	새로운 절차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공고상 수입자동승인 품목 인 경우 도입허용 -생산공정에 소요되지 않더라도 도 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입허용

尖端技術產業 범위 조정 수요조사

— 通産部, 업계 · 관련부처 대상 需要조사 —

통상산업부는 조세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조정키로 하고 업종별 단체 및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대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존 범위 안에서도 그동안의 환경변화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첨단기술산업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통신부는 업종별 단체 및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려내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서는 공보처가 케이블 TV 관련 소프트웨어제품을 첨단기술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고 업종별 단체들도 경영자문업, 엔지니어링, 산업폐기물처리업, 영상산업 등 기술집약형 서비스업도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통신부는 또 기존 범위안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도 당초 전망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거나 빠른 성장과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산업 범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현재 첨단기술산업 범위에는 전자 · 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 · 신공정 재료 · 소재 신물질 · 생명공학 광학 · 의료기기 항공기 · 수송 환경 · 에너지 · 자원 지식서비스 등 8개 분야에 157개 기술 및 제품이 포함돼 있다.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드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 내국세 및 관세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용, 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技術保險제도 내년부터 시행 －通産部, 업계 기술개발실패부담 덜어－

통상산업부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르는 자금압박, 부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기술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통신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구조를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기술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는 이에 따라 4~5월 중 기술보험제도 도입시안을 만들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기술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조치 등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보험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통신부는 지난 1월 재정경제원, 과기처,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은행, 보험감독원,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의 실무전문가 15명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기술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64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소속된 138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기술보험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2%가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했고 49.8%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등 전체 응답자의 95%가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보험제도가 도입돼 정착됐을 경우 기업연구개발 활동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2%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대답했고 16.8%는 중소기업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해 응답자 전체가 그 실효성을 인정했다.

기술보험제도의 도입형태로는 응답자의 54.2%가 정부보조금에 의한 형태를 희망했고 자가보험 형태는 3.1%만이 희망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기술보험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보험제도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의 경우 기업이 준조세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임의가입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험에 적용되는 기술개발단계에 대해서는 47.1%가 연구개발 및 시험단계를 선호했으며 공정 건설과 시운전 · 시제품 생산단계(16.8%), 시장조사 및 기술정보 입수(9%), 경제성 검토와 기업화 계획단계(6.3%), 생산단계(3.6%), 판매단계(2.8%)의 순으로 응답해 연구개발 및 시험단계에 우선적으로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中企 CALS · EDI도입 支援 — 通産部, 소요자금 100% 연리 7% 기간 8년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CALS)체계 도입과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에 장기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CALS체계도입 및 EDI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요자금의 100%를 원리 7%,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등의 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CALS도입 및 EDI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 컴퓨터지원 생산설비 도입비 등이다.

아울러 정보화 진단 · 지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CALS체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개별 또는 집합지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CALS체계 구축 등 정보화를 추진코

자 하는 공동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유통을 목적으로 CALS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CALS관련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 등이다.

또 기업의 CALS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제작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다른 업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CALS체계 도입 우수업체 지정사업 등이다.

자금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 하면 된다.

정부지원開發技術 산업화지원 — 通產部, 需要기업에 이전 로열티받기 —

통상산업부는 수요업체를 찾지 못해 국내업체들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미활용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신부는 오는 4~5월께 '공업기반기술운영요령'을 개정, 정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활용, 사용처를 찾지 못한 산업기술을 발굴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 국내업체들에 로열티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기술력이 취약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술개발 시점을 놓치거나 여건변화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사장되는 산업기술이 적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같은 미활용기술 이전을 대폭 강화, 국내기술이 있는데도 외국업체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는 현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50%, 중소기업은 최고 67%의 범위내에서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補充役산업기능요원 服務기간단축 – 정부, 中小企業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유도키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보충역 출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28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기술우대신용보증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키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1일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개발능력의 평가를 생략하고 이 부문의 평가점수를 만점(25점)으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제2차 중소기업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지원대책에 따르면 작년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한 현역 2만3천명중 1만9107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편입비율이 83.1%로 높은 편이나 보충역의 경우 1만2500명중 1801명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등 편입율(14.4%)이 매우 낮은 실정을 감안, 보충역 출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보충역 출신 산업기능요원의 근무분야(직종)를 완화, 보충역 출신 산업기능요원의 對중소기업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상반기중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4월1일부터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능력 평점을 심사 없이 만점(25점)을 주도록 했다.

현재 技信保의 보증심사평점은 기술개발능력 25점, 상환능력등 신뢰도 19점, 재무상황 15점, 기술인력수준 13점, 제품경쟁력 13점, 경영주 능력 9점, 사업성 6점등 총 10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증심사평점이 50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中企廳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技信保로부터 손쉽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 중기청은 추천기준을 마련, 중소기업들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기관을 현행 43개에서 한국은행·산업은행·도로공사·가스공사등을 추가, 총 57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 96정보엑스포 전시관내에 '중소기업관'을 설치하고 우수중소기업 200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中企 품질경영褒賞기회 확대 – 기술개발 · 品質革新업체에 가산점 –

통상산업부는 품질경영활동을 전 산업계에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상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유통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포상신청절차 및 심사방법을 간소화했다.

또 ISO 9000인증 업체 등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과 관련,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통신부는 그동안 舊공업진흥청에서 시행해오던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올해부터 통신부 주관하에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포상요령에 따르면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ISO 9000인증, KS 마크, AS마크, NT마크, KT마크, EM마크, 100PPM 등 기술 및 품질관련 국가인증을 획득한 업체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했다.

또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경영진단기관에서 경영진단을 받은 업체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분규 벤탈업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 등은 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유공자 훈포상과 관련해서도 상훈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경우, 중대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및 그 임직원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품질경영활동을 산업경쟁력 제고의 효과적인 실천수단으로 전 산업계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신청서류 및 심사방법을 간소화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비율을 높였다.

또 현장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포상대상 업종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청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해 한국품질대상의 경우에만 품질경영상을 수상후 3년이상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체로 제한하되, 기타 기업체부문상은 국내기업 또는 국내소재 외국기업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체부문의 포상과 관련 100PPM상과 제안우수기업상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에 기여한 업체 및 단체에 수여하는 산업표준화상과 소비자보호 체제의 구축 및 그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을 신설했다.

포상요령에 따른 신청서는 국립기술품질원 품질관리과(TEL : 0343-84-1563)와 한국표준협회 QM진흥부(TEL : 369-8262~9) 및 표준협회 전국지부에서 배포하며 7.31~8.31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새 품질인증제도 조속 마련 - 中企廳,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중기마크」 -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새로운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우수품질(EM)마크와 신기술(NT)마크, Q마크, GD마크, 원구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ST마크 등 기 시행중인 인증을 기초로 해 새로운 중소기업 품질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제품하자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여부 등도 선정기준으로 삼아 품질과 안전성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만 「중기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전시 및 판매 등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NT마크 등 기존의 각종 인증업체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새로 도입될 품질인증의 명칭을 ‘중기마크’로 잠정 결정했다」며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산하 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등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방안을 의뢰,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술개발제품 購買 확대 – 조달청, 財經院에 법령개정안 제출 –

앞으로 기술개발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구매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내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신기술제품(KT)이나 환경표시(E)제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과 ‘품’ 마크를 획득한 제품도 지명경쟁 입찰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우대해주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본청과 전국의 지청에 ‘기술개발제품 종합안내상담창구’를 개설, 기술개발제품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 해당업체와 수요기관을 연결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전략 기술개발업체가 공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신기술상 품 표시제품(KT) 기계류와 부품 가운데 품질인증제품(EM)은 정부조달 우선구매제품으로 인정하도록 재정경제원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모두 2조4900억원어치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바 있다.